

# 산업안전보건법의 제·개정 요지(5)



산업안전보건법이 전부 개정됨에 따라 산업안전보건법의 역사를 되짚어 보고자, 협회는 1981년 산업안전보건법이 처음 제정된 이후부터 현재까지의 제·개정 역사와 주요 골자를 소개합니다. 이 시리즈는 ‘산업안전보건법 제·개정사’(2015, 고용노동부)를 발췌하여 만들었습니다.

정리 대외홍보팀

## 2. 산업안전보건법 개정 요지 (제14차~18차)

### 제14차 개정<법률 제7428호, 2005. 3. 31.>

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이를 인용하고 있는 관계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임.

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 
[2005. 3. 31, 법률 제7428호]

#### [본문 생략]

#### 부칙

제1조 (시행일)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 내지 제4조 생략

제5조 (다른 법률의 개정) ①내지 ⑥생략

⑥ 산업안전보건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

한다.

“파산자”를 “파산선고를 받은 자”로 한다.

⑭ 생략

제6조 생략

### 제15차 개정<법률 제7467호, 2005. 3. 31.>

#### [일부 개정]

유해·위험설비를 보유한 사업장의 사업주는 사업장에 비치한 공정안전보고서의 내용을 변경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이를 보완하도록 하고, 노동부장관은 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정안전보고서의 이행상태를 정기적으로 평가할 수 있도록 하며, 노동부장관은 공정안전보고서의 이행상태를 평가한 결과 보완상태가 불량한 사업장의 사업주에 대하여 공정안전보고서를 다시 제출하도록 명할 수 있도록 함으로서 유해·위험설비로 인한 안전사고를 예방하려는 것임.

제16차 개정<법률 제7920호, 2006. 3. 24.>

[일부개정]

산업구조 및 고용구조의 다양화에 부응하여 사업장의 특성에 맞는 자율적인 안전·보건활동 등을 촉진하기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고, 안전관리대행기관·보건관리대행기관 및 재해예방전문기관에 대하여 업무정지를 명하여야 할 경우로서 업무의 정지가 이용자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공익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업무의 정지에 갈음하여 5천만 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며, 근로자가 산업재해로 사망한 사고가 발생한 사업장에서 그 산업재해와 관련하여 안전상의 조치 의무 또는 보건상의 조치 의무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·보완하려는 것임.

제17차 개정<법률 제8372호, 2007. 4. 11.>

근로기준법이 전부 개정됨에 따라 이를 인용하고 있는 관계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임.

근로기준법 전부개정법률

[2007. 4. 11, 법률 제8372호]

[본문 생략]

부칙

제1조 (시행일)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 <단서 생략>

제2조 내지 제15조 생략

제16조 (다른 법률의 개정) ①내지 ⑭생략

⑮산업안전보건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제2호 중 “제14조”를 “제2조”로 한다.

제51조제1항 중 “「근로기준법」 제104조”를 “「근로기준법」 제101조”로 한다.

⑯내지 ⑳생략

제17조 생략

제18차 개정<법률 제8373호, 2007. 4. 11.>

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전부 개정됨에 따라 이를 인용하고 있는 관계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임.

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전부개정법률

[2007. 4. 11, 법률 제8373호]

[본문 생략]

부칙

제1조 (시행일)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 내지 제5조 생략

제6조 (다른 법률의 개정) ①내지 ⑤생략

⑥산업안전보건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61조의3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「산업재해보상보험법」 제80조제1항”을 “「산업재해보상보험법」 제64조제1항”으로 한다.

⑦내지 ⑨생략

제7조 생략